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. 2. 9 선고 2021가단545 판결 [토지인도 및 건물철거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. 12.

판 결 선 고 2022. 2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보성군 C 대 84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, 10, 11, 5, 6, 7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 84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, 4호증, 감정인 D의 측량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

종합하면, 원고는 2020. 11. 5. 전남 보성군 C 대 84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, 10, 11, 5, 6, 7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위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, 10, 11, 5, 6, 7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판사 유재현

감 정 도

토지 소재	보성군
-------	---

별 과	영 령
	지역선
	건물 차대선
	이계면선

지 번	지 역	영 령	내 용	비 고
	대	지역선	1,2,3,4,5,6,7,8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	
		건물 차대선	8,9,10,11,12,13,8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	
		건물 경유선	9,10,11,5,6,7,8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	

